

# 경상북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소속기관 및 부서 : 경상북도 기후환경국

## 2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년 1월 10일, 최병근 의원 외 12명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1월 1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

(2025년 2월 4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)

## 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최병근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고령 빈곤층이 대부분인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유관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## 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(안 제1조 ~ 제2조)
-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(안 제3조)
-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(안 제5조)
-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(안 제6조)
-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 선정을 규정(안 제7조~제8조)
- 비용의 지원을 규정(안 제9조)
- 시·군 또는 관련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규정(안 제10조)

## 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정진오)

### 가. 법적 근거 및 타당성

- 「경상북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은 고령 빈곤층이 대부분인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유관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
-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입법취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## 나. 주요 내용

- 안 제1조(목적)에서 본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나
  - “안전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” 를 “안전과 보호에 필요한 안전장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” 로 하여 해당 자치법규의 해석 지침이 되는 목적규정에 자치법규의 입법목적이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
- 안 제2조(정의)제2호에서 재활용품 수집인을 정의하였으나
  - “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” 를 “사업주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” 로 하여 고용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
  - “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·운반하여 판매하는 사람” 을 “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·운반하여 판매하는 사람” 으로 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
- 안 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제1항에서 각호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
  - 제3호와 제4호에서 규정된 지원 내용은 중복된 사항으로 제3호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
- 안 제7조(지원대상)에서 지원대상을 경상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

- “경상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 수집인” 을 “경상북도 내에 주민등록된 재활용품 수집인” 으  
로 하여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용어를 사용하여 지원대상을  
규정하여야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
- 안 제9조(비용의 지원)제1항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 
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
  - “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” 를  
“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.” 로 하여 상황에 따  
라서 장비의 직접 지원이나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 
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#### 다. 종합의견

- 「경상북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은 고령 빈곤  
층이 대부분인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지원하는  
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 
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유관 기관의 협조 체계 구축  
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  
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, 시의적절  
하며 입법취지나 필요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